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·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설(안 제8조 ~ 안 제13조)

○ 대　　상 :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유족

※ 1호(순국선열), 2호(애국지사), 3호(전몰군경), 4호(전상군경), 5호(순직군경), 6호(공상군경)

○ 금　　액 : 월 3만원

○ 지급제외 :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나. 사망위로금 지급신설(안 제14조)

○ 대　　상 :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중 사망자

○ 금　　액 : 20만원

○ 지급순위 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(배우자, 자녀, 부모 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제4조제1항, 제5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반영예정

다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예고기간 : 2014.10.17~11.5(20일간)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조례로써 보훈 가족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 판단됩니다.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8조에서 제13조에 본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1호 순국순열, 2호 예국지사, 3호 전몰군경, 4호 전상군경, 5호 순직군경, 6호 공상군경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며,

- 안 제14조에는 보훈예우수당 수급자 중 사망시에 20만원을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훈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더 높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인근 시·군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 중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 등을 인상(안 제4조)

○ 참전명예수당 “월 4만원”을 “**월 5만원**”으로 인상

○ 유공자 사망위로금 “20만원”을 “**30만원**”으로 인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조 제1항, 제9조제5항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예정

다.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　　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〔예고기간:2014.10.17~11.5(20일간)〕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명예를 소중히 선양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위로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은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
-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1만원 인상 지급하고,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도 20만원의 위로금을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입니다.
- 우리 군의 참전유공자 수는 630명, 사망 위로금을 60명으로 추정할 경우 추가 사업비는 3,960만원이며,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현실 물가 등을 고려 인상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,
- 특히, 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만큼 경제적으로 일부나마 보조하여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